

2022 송파구 적극행정 실행계획

송파구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조직 내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·근절하여 대민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함

I

적극행정 추진현황

1

추진근거 및 배경

□ 추진근거

-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 (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)
- 서울특별시 송파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2조 (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)
- 2022년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제출 안내 [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(2022.03.30.)]

□ 추진배경

- 코로나19 장기화,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사회·경제적 변화에 걸맞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나, 기존의 제도나 선례를 답습하는 업무관행 지속
-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습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2년 내 구민의 삶이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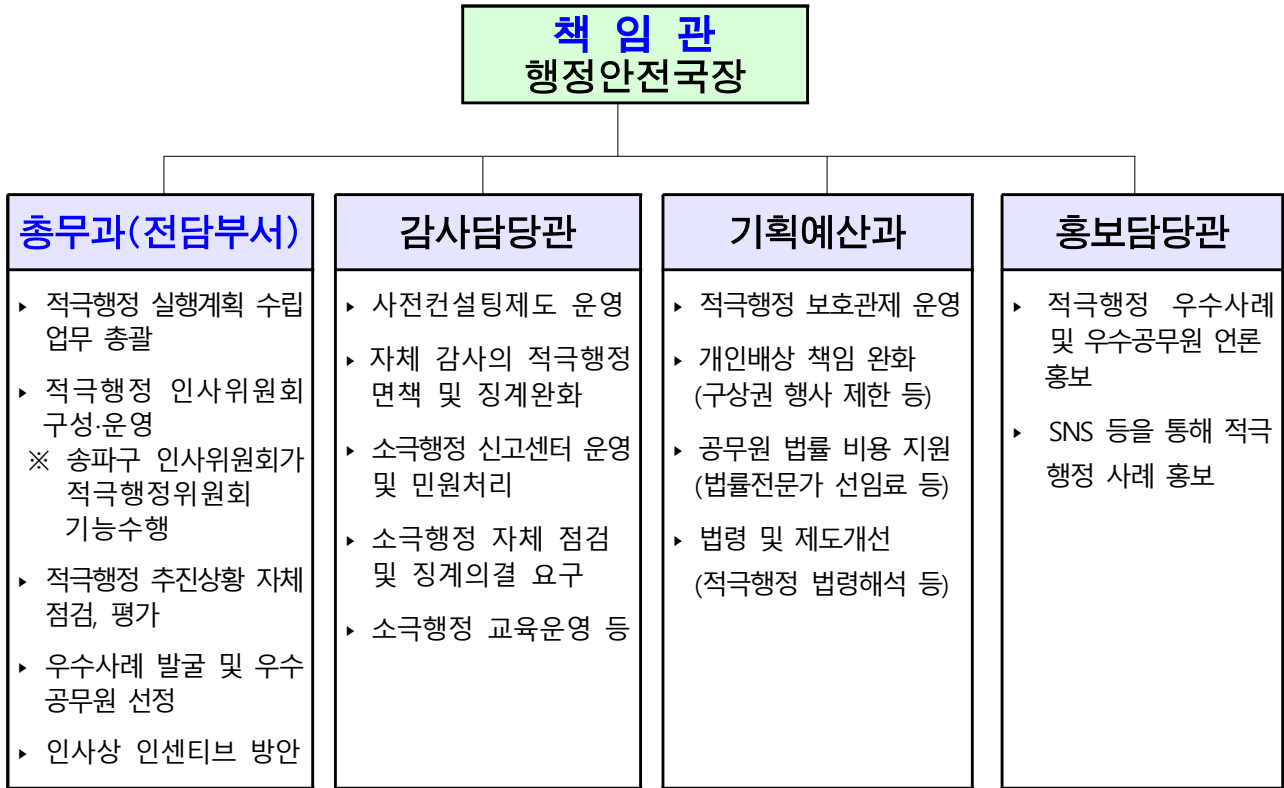
2

2021년 주요 추진성과

□ 송파구 적극행정위원회 개최

- 위원구성: 위원장(부구청장), 부위원장(행정안전국장) 및 위원
※ 송파구 인사위원회가 적극행정위원회 역할 수행
- 심의안건
 - 2021년 송파구 적극행정활성화 실행계획 ('21.4.)
 -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('21.9.)

□ 적극행정 추진체계 유지



□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

- 선발인원: 4명
- 대상기간: 2021.1.1. ~ 2021.6.30.
- 우대사항: 구청장 표창 및 부상 30만원(서울사랑상품권)
- 선발방법: 국·소별 추천인원 9명 중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4명 선발

□ 적극행정 시책추진 및 제도개선

- 송파형 적극행정 운영을 위한 **실행계획 수립** 및 전 부서 실행계획 전과
-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지원을 위한 **법률자문 지원** (기획예산과)
- 사전컨설팅 제도 확대 및 **소극행정 타파**를 위한 **신고센터 운영**

□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

- 접수경로: 국민신문고 내 '소극행정신고'
- 운영결과 (2021.1.1. ~ 12.31.)

구분	계	답변 부서		소극행정 해당여부
		감사담당관	타 부서	
상반기	66건	12	54	0
하반기	148건	21	127	0

※ 대부분 단순 민원으로, 실제 소극행정에 해당하는 건은 없었음

□ 송파구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

- 개정법령: 「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전결처리규칙」
- 공 포 일: 2021. 5.20. 일부개정
- 주요내용
 - 일하는 조직 문화조성을 위한 팀장 기안 업무 신설 및 전결권 상향
 -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 이관 및 조정사항 반영 등
- 개정내역

구 분	팀장기안 상향	전결권 상향	단위업무 이관	단위업무 신설	업무 및 사업 폐지
개정건수	17건	24건	7과 16건	26건	2건

□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

- 제정법령: 「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- 공 포 일: 2021. 9.30. 제정
- 제정목적
 - 유명무실한 위원회 통·폐합 또는 비상설화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
 - 위촉 위원에 대한 정보 공유로 중복 위촉을 지양하고 여성 및 청년위원 비중 확대
- 주요내용
 - 송파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
 - 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,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등

3

반성 및 평가

- 적극행정 추진체계가 잘 유지되었고, 일하는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사무전결처리규칙을 개정하는 등 적극행정의 기초 환경을 조성하였음
- 내·외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홍보하는 게시판을 활성화하는 등 조직 전반에 적극행정 의지를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함

II

'22년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과제

비전

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로 주민편익 증진

전략

- I 적극행정 추진체계 지속정비를 통한 적극행정 동참 분위기 확산
- II 적극행정에 대한 보상으로 적극행정에 자발적 참여 유도
- III 적극행정 보호 및 지원으로 소극행정 타파
- IV 소극행정의 엄정한 제재를 통한 소극행태 개선 및 예방

5대 추진방향 12개 핵심과제

추진방향

적극행정 문화 조성(3개)

핵심과제

- 1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
- 2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착
- 3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

적극행정에 대한 보상(2개)

- 1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
- 2 적극행정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

추진방향

적극행정에 대한 보호 및 지원(3개)

핵심과제

- 1 실무자 의사결정 부담 완화
- 2 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
- 3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

소극행정 혁파(2개)

- 1 소극행정 단속 및 엄정 조치
- 2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구축

추진방향

적극행정 참여·소통 강화(2개)

핵심과제

- 1 인식·행태 개선교육 실시
- 2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

Ⅲ

지방자치단체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

1

적극행정 추진체계 정착

□ 전담부서 및 책임관 역할 강화

- 적극행정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총무과로 하고 책임관을 행정안전국장으로 지정하여 대외적 역할 강화
- 전담부서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사례, 실적 등을 수집, 점검하고 우수사례 발굴·확산에 지속적 노력
- 책임관은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적극행정 관련 부서와 업무분장 가능
- 전담부서의 장은 적극행정위원회 간사 역할 수행

2

적극행정 위원회 운영 활성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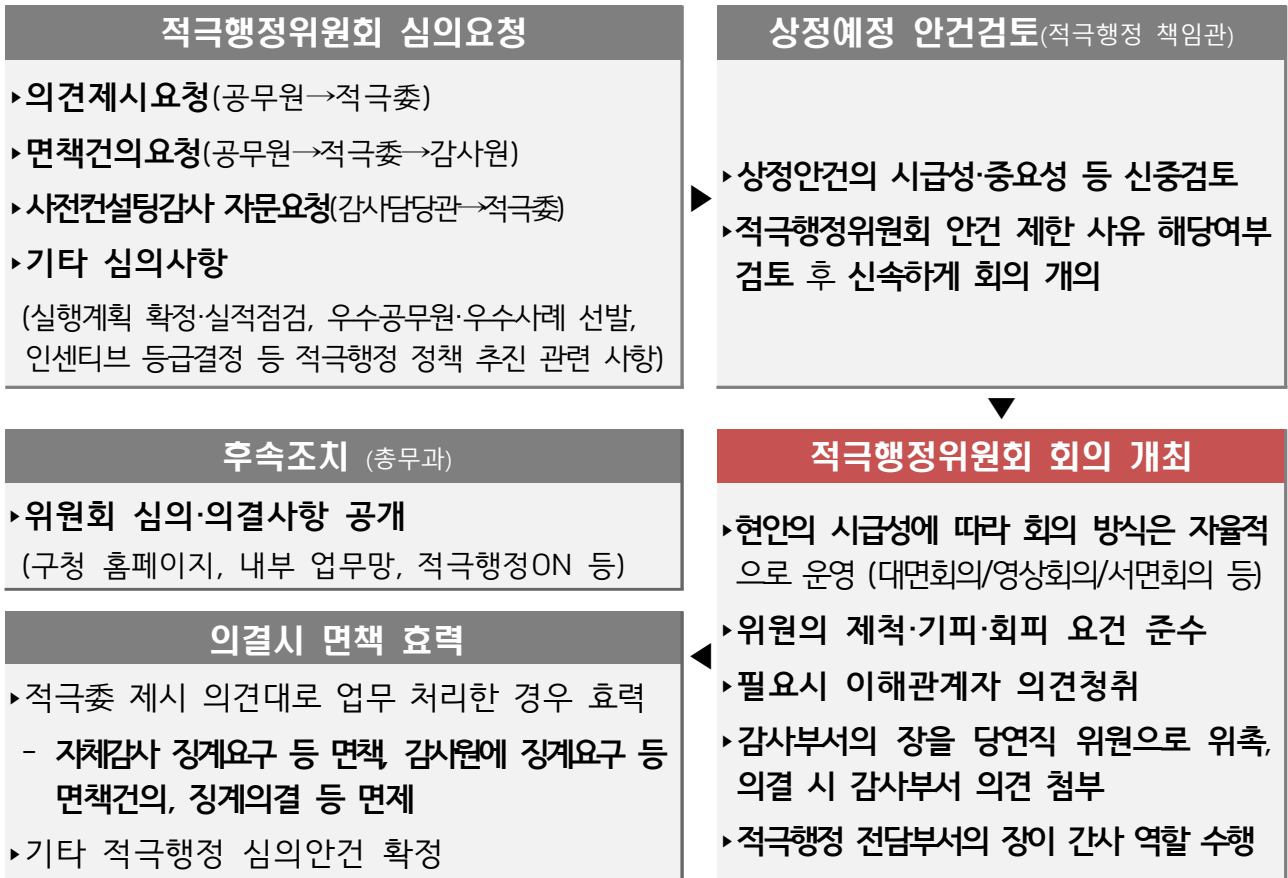
□ 적극행정 위원회

- **구 성:** 송파구 인사위원회가 적극행정위원회의 역할 수행
- **기 능:** 적극행정 실행계획,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, 공무원의 의견제시 요청 건 등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 심의
- **운영시기:** 정기회의(반기별 1회), 수시회의 등
- **회의방식:**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 회의 개최

<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·의결 사항 >

-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- 인가·허가·등록·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 위원회에 직접 업무 처리 방향 등에 관해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
-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
- 사전컨설팅의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 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자체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
-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·추진에 관한 사항

<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흐름도 >



IV

적극행정에 대한 보상

1

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

□ 선발개요

- 시 기: 반기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
- 규 모: 반기별 1명~4명
- 선발기준
 - 적극적 업무추진을 통해 규제혁신, 민원 또는 갈등을 해결한 자
 - 창의적·도전적 정책을 수립·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자
 -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 또는 행정효율 향상에 기여한 자

□ 선발절차

후보자 추천
(주민, 부서→총무과)

- ▶ 주민 추천 (송파구 홈페이지에 담당자 이메일 기재)
- ▶ 부서 추천 또는 자체선발

후보자 선정 및
적극행정 심의 요청
(총무과→인사위원회)

- ▶ 우수공무원 추천 후보자 선정
 - 책임관 주최로 행정안전국장(총괄), 감사, 법무, 인사, 기획 관련 부서장 등 참여
- ▶ 우수공무원 추천 후보자 인사위원회 심의·의결 요청

적극행정 심의·의결
및 결과 통보
(인사위원회→총무과)

- ▶ 인사위원회에서 우수공무원 심의·의결

인사상 우대조치
(총무과→부서,개인)

- ▶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표창
- ▶ 우수공무원 인사상 우대조치 시행
 - 인사상 우대조치는 '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우대 심의위원회'(가칭)에서 우대 종류 결정

사례공유 및 확산
(총무과→전 부서)

- ▶ 적극행정 우수사례 내·외부망에 사례 전파
- ▶ 적극행정 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

□ 개 요

- **부여대상:** 인사위원회에서 우수공무원으로 선정 된 자
- **방 법:** (가칭)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우대심의위원회에서 결정
 - 구 성: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
 - 위 원 장: 부구청장
 - 심의위원: 각 국·소장 (*간사는 전담부서장으로 함)
- **우대사항 결정:** 심의위원 2/3이상 출석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
* 지방공무원법 제19조 의결방식 준용
-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(총무과)

□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원칙

-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(중복불가)
- 인사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

□ 인사상 인센티브 종류

구 분	주요내용
특별승진	▶ 5급 이하 공무원 중 직무수행능력 탁월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구정발전에 공헌이 매우 큰 자 ▶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1계급 특별승진 임용
특별승급	▶ 적극행정 추진 등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탁월하여 구정발전에 기여 한 자 ▶ 호봉제 적용 공무원(6급 이하)의 호봉을 1단계 승급
특별휴가	▶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의 하나로 포상휴가
표창 및 포상	▶ 주요 업무의 적극적 수행으로 탁월한 성과 창출 ▶ 외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구 위상을 제고한 자
희망부서로의 전보 시행	▶ 필수보직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원하는 희망부서로 전보
교육훈련 우선 선발	▶ 국내·외 교육훈련에 우선 선발

□ 고도의 정책결정사항 실무자 징계 제외

- 실무자의 구청 핵심과제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은 실무진에게 고의·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를 문책기준에서 제외 또는 감경
 - ※ ‘고도의 정책결정사항’이란 구청의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, 다수기관 연관 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을 의미. 단, 사적이해관계가 없고 업무처리 과정에 고의·중과실이 없어야 함.

□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한 의사결정체계 마련

- 고도의 정책사항으로 기관에서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은 관련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등을 통해 의사결정체계 마련
- 전 부서는 운영되지 않거나 전문성이 없는 형식적인 위원회는 폐지하고 의사결정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위원회 정비 및 시행

□ 위임전결 규정 재검토

-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한 결정권한 위임(전결)이 실무자에게 과중한 책임을 부여하는지 검토 후 전결규정 보완하여 실무자 부담 완화

□ 구상권 행사 제한 및 법률 지원

- 구청장은 스스로 또는 각급 검찰청의 요청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, 적극행정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를 고려하여 행사 여부 결정 (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)
- 소속 공무원의 법률전문가 조력
 -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징계 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소명이 필요한 경우
 -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·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는 경우
- 소속 공무원의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대한 지원
 -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(손해배상청구 등)을 당한 공무원에 대하여 소송대리인 선임 등 지원

□ 사전컨설팅 제도 개요

-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 감사기관에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의견을 구하는 경우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

※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2

- 사전컨설팅을 받고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

□ 사전컨설팅 대상사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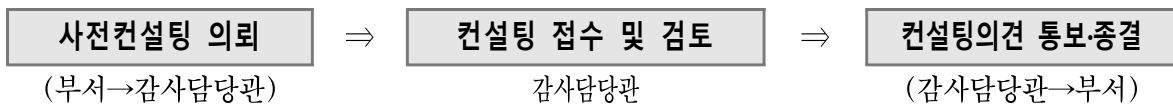
-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 기관 관련 등으로 자체판단이 어려운 사안
- 관련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
-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법률로 인해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업무
- 정책결정 사항이나 사업변경 등으로 인해 예산낭비 등이 우려되는 업무

< 사전컨설팅 제외 대상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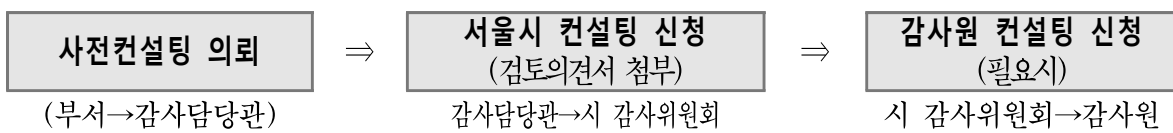
- ① 관련 법령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등을 위해 소극 행정·책임회피 수단으로 사전컨설팅을 이용하는 경우
- ② 신청기관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
- ③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·부당여부 확인을 위한 컨설팅 신청일 경우

□ 사전컨설팅 처리절차

- 자체처리가 가능한 경우



- 자체처리·판단이 어려운 경우



□ 사전컨설팅 운영방안

-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을 위한 자체 사전컨설팅 운영 규정 등 수립
- 사전컨설팅 대상 업무에 대한 감사, 징계 면책 제도 도입

□ 제도 개요

- 추진근거: 서울특별시 송파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
- 면책요건
 -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,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
 -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
 -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

□ 면책제도 보완·확대를 위한 추진사항

- 사전컨설팅 의견에 따른 업무 처리 시 징계 등 면제
 - 감사원, 중앙행정기관, 상급 자치단체 감사기구, 자체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 및 인사위원회 자문을 요청하여 심의·의결된 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 등 면제
 - 단,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사전컨설팅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등의 경우는 제외
 - 적극행정 면책기준 간소화 및 심의절차 의무화
 -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2 개정 시행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기준 간소화 등 제도개선 추진
 - 징계의결 전 공무원이 적극행정 면책을 주장할 수 있도록 의견서 접수 절차를 명문화하고 심의 결과를 징계 의결서에 반영
 - 적극행정에 따른 징계 면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정비
 - 공무원의 적극행정 중 발생한 비위에 대하여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적극행정 장려
- ※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에 의거 소극행정은 징계 감경 제외

1 소극행정 엄정 조치

□ 기본원칙

- 소극행정에 대하여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
- 소극행정 관련 민원발생 시 주민불편 민원사항을 우선 처리 후 공무원의 비위 정도에 따라 엄정 조치
-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해 비위의 정도 및 고의·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“징계” 또는 “주의, 훈계” 조치
- 주의 또는 훈계 조치시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근무성적평정, 성과상여금 지급 등 인사상 불이익 부여

【징계양정기준(지방공무원 징계규칙)】

비위의 유형	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	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	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/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	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/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	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
1. 성실 의무 위반					
마. 부작위·직무태만(바목에 따른 소극행정 제외) 또는 회계질서 문란		과면	해임	강등-정직	감봉-견책
바. 소극행정		과면	과면-해임	강등-정직	감봉-견책

□ 소극행정 현장점검

- 자체 계획에 따라 소극행정 행태 주기적 점검 및 부조리 사례 집중 단속
- 점검결과 악성·상습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하고 법령 제도상 불합리한 사항은 제도 개선 또는 개선 요구

< 주요 점검유형 유형 >

- ① 소극적 행정: 인·허가 처리지연, 법령에 맞지 않는 서류보완 요구 등
- ② 규제 남용: 보고·신고사항을 승인·허가 사항으로 처리
- ③ 진입 제한: 과도한 실적을 입찰요건으로 하는 등 신규업체 진입제한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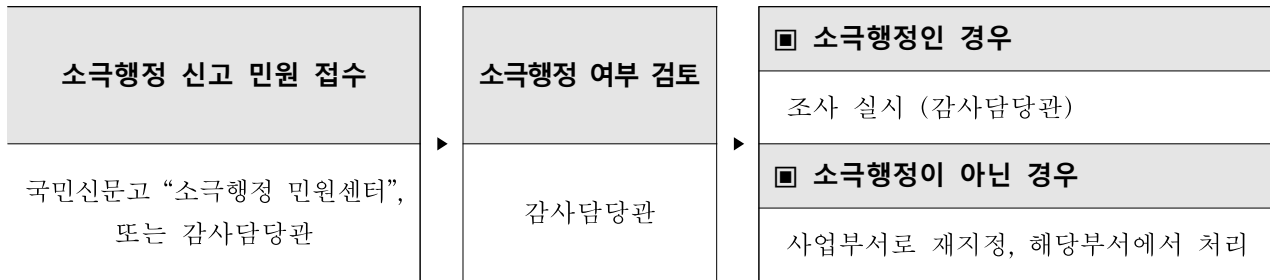
□ 징계처분시 승진임용 및 제한기간 가산

- 소극행정으로 인한 징계를 받은 경우 승진임용 또는 승급 제한기간을 6개월 가산하여 소극행정 경각심 제고

□ 추진배경

- 소극행정으로 피해를 본 국민이 피해상담·구제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민원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여 소극행정 예방

□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



- 접수된 민원이 소극행정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담당관은 자체적으로 소극행정 여부를 조사
 - 소극행정 민원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처분 취소·변경, 관계 공무원에 징계요구 등 적절한 조치 시행
 - 소극행정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부서로 민원처리부서 재지정
-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에서 접수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결과 통보
- 일반적인 사안은 7일, 실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14일 이내에 처리 (부득이한 경우 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)

□ 처리 불가민원에 대한 충분한 설명

- 인·허가 등 거부처분시 표준설명서식을 활용하여 민원인에게 법적 근거와 답변사유, 권리구제절차를 명확하게 설명
- 복합민원의 경우 협조부서의 검토의견, 담당자, 연락처 안내

1

인식·행태 개선 교육 실시

□ 적극행정 기본 직장교육

- 대 상: 송파구 및 출자출연기관 전 직원
- 이수원칙: 연 1회 이상 적극행정 교육 수강
- 교육방법: 집합교육
 - 교육시기: 연 1회
 - 강 사: 행정안전부, 인사혁신처, 서울시 등 적극행정 전문강사

□ 적극행정 온라인교육 이수 독려

- 대 상: 송파구 및 출자출연기관 전 직원
- 과 정 명
 - 적극행정의 이해(실무자, 관리자) ▶ 서울시 인재개발원
 -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.0 ▶ 법제처 나라배움터
- 교육시간: 1~2시간 (과정별 상이)
- 교육시기: 과정별 개설 후부터 2022년 연중 상시

2

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

□ 적극행정 우수사례 전파로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

- 송파구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시 사내게시판, SNS 등을 통한 대내외 홍보
 - 적극행정 실천 직원 의욕 증진
-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내부망 '적극행정' 게시판에 게재
 - 아이디어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적극행정에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.

끝.